

의안 번호	2414	【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5. 2.(금) 안영호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5. 16.(금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(안 제4조)
-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(안 제6조~제7조)
- 산불방지 활동, 산불진화,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(안 제8조~10조)
-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~제12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산림보호법」 제29조
-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, 수백 년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.
- 우리 구의 전체 면적은 37km<sup>2</sup>이고 임야가 13.59km<sup>2</sup>로 37%를 차지하고 있음. 산불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,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이 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산불 발생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,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, 산불진화 시설 확충 및 인력에 대한 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등 산불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「산림보호법」

**제29조(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)**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,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(이하 “지역산불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

**제19조(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·시행)**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(이하 “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”이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(이하 “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”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
2.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
3.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
5.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,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,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